의 안 번 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 . . . (제 회)

도 시 가 스 사 업 법 시 행 규 칙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에너지법」 제16조의3에 따른 에너지이용권과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간 연계 체계를 유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2. 9. ~ 3. 2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산업통상부령 제　　호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9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.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의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.

부　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9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	이 규칙은 -----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36